

의안번호	2218131
의 퇴 인	송석준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 계 번호	26B2028

국가인프라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가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억 3,320만원, 2032년 1,92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억 1,000만원(연평균 4,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국가인프라위원회 (안 제6조 및 제9조)	19.2	19.2	19.2	19.2	19.2	96	19.2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13조)	114	—	—	—	—	114	22.8
합계	133.2	19.2	19.2	19.2	19.2	210	42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국가인프라위원회)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우선순위, 전략사업의 지정·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국가인프라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부처 간 이견 조정,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자문 및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인프라 관련 개별법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국가인프라 관련 개별법에 의한 인프라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4. 제15조에 따른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및 결과 공개 5. 국가인프라 평가 및 결과 공개 6. 국가인프라 관련 표준에 관한 사항 등 7. 국가인프라 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지자체 간,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 및 자문 8.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9. 국가인프라 재원 조달현황 분석, 중장기 재원 소요 추계, 재원 확보 방안 및 효율적 재원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10. 국가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안 제10조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나 연구 및 자문, 분과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4	안 제11조 (사무기구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2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전문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항) 1. 전략 기본계획 수립 및 정합성 검토의 기술적 지원 2. 제22조에 따른 국가인프라 평가 및 보고서 발간 지원 3. 국가인프라 데이터 표준 관리 및 지능화 기술의 현장 적용 지원	의무규정
		정부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13조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이하 “전략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전략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국가인프라 전략의 중장기 비전, 전략의 기본방향 2. 국가인프라의 체계적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속가능한 국가인프라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기술주권 확보,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인프라의 통합적 수요·공급 전망 및 부처 간 국가인프라 운용의 정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전략 기본계획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및 이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인프라의 지역균형 및 기후·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 국가인프라의 평가 및 지능화에 관한 사항 10. 국가인프라 사업운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에 관한 사항 11.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항) 위원회는 전략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22조 (국가인프라의 평가)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인프라 평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대상 시설의 특성, 중요도, 평가 목적에 따라 전수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문가 인식도 조사 방식 등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23조 (국가인프라의 지능화 등)	국가는 국가인프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전 과정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프라 지능화 촉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지능화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데이터 표준을 심의하며,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 인프라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24조 (국가인프라 혁신 기술의 개발·추진 및 이용 지원)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이란 국가인프라의 지능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다부처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혁신기술을 말하며, 정부는 국가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통해 확보된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을 국가인프라 현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인프라 관리주체에 예산 지원,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26조	국가인프라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인프라 분쟁 조정위원회)	지자체 간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인프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제2항) 1. 인프라 사업의 노선, 입지 및 재원 분담에 관한 갈등 2. 부처 간 인프라 계획의 상충 및 인허가 의제 관련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6조 (국가인프라위원회)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	• (추계)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함
2	안 제10조 (분과위원회 등) 안 제26조 (국가인프라 분쟁조정위원회)	×	• (제3호) 분과위원회·전문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예상되는 분과위원회 수, 민간위원 구성비, 민간위원 구성비율, 회의 개최 횟수, 전문위원 수, 조정 신청 건수 및 전문적인 조사·자문 수행 여부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11조 (사무기구 등) 안 제12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	• (제3호) 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전문지원기관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무처의 조직·정원·직급별 인력구성, 공무원 파견 규모,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여부와 개소 수, 위탁업무 범위 및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13조 (전략 기본계획의	○	• (추계) 국가인프라 전반에 관한 중장기 전망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는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용역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수립 등)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적용하여 추산함 － 매년 실시하는 전략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성과 점검은 기본계획과 관계 기관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위원회와 사무처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함
5	안 제22조 (국가인프라의 평가) 안 제23조 (국가인프라의 지능화 등)	×	• (제3호) 국가인프라 평가와 데이터 통합·표준화 및 지능화 플랫폼 구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시설의 범위, 전수·표본조사 등 평가방식, 표본규모, 평가항목, 통합대상 데이터의 종류·규모·표준, 관계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범위, 플랫폼 구축방식 및 운영인력 등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조사비와 시스템 구축·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24조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의 개발추진 및 이용 지원)	×	• (제3호) 국가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의 과제 수, 과제별 지원규모, 사업기간, 참여 부처, 연구개발 방식 및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 등이 대통령령과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국가인프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9조), 전략 기본계획 수립(안 제13조) 비용을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산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인프라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및 제9조)

□ 국가인프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확정적이므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함

- 위원수: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는 16인으로 가정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민간위원 수를 특정하기 곤란하나, 제정안은 총 30인 이내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6인으로 가정함
- 개최일수: 연 4회로 가정
 - 개최일수는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수립, 투자 우선순위 결정, 전략산업의 지정 및 국가 인프라 평가 사무 수행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 단가: 민간위원 회의당 참석수당은 1인당 30만원을 적용함
 - 1인당 회의참석수당 20만원, 유인물비 등 안전검토비 10만원
- 추계방법: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16인)에 연 4회, 1인당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비 30만원을 곱하여 추산함

□ (추계결과)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2] 국가인프라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위원회 운영비용	19.2	19.2	19.2	19.2	19.2	96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나.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3조)

- 제정안은 위원회가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변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유사 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
- (유사사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건의 사업비 평균은 1억 1,400만원 수준으로, 유사사례 사업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유사 기본계획 수립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요기관	사업년도	사업비
제2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2025	90
제8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정책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2025	151
국가물류기본계획(2026~2035)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2025	100
평균			11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추계결과)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참고하여 국가인프라 기본계획을 2028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수립	114	-	-	-	-	114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 계획, 투자우선순위, 전략사업의 지정·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 회가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위원회 운영비용	19.2	19.2	19.2	19.2	19.2	96
국가인프라 전략 기 본계획 수립	114	—	—	—	—	114
합계	133.2	19.2	19.2	19.2	19.2	210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 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 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